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00
----------	-------

발의연월일 : 2026. 1. 28.

발 의 자 : 김 윤 · 서영석 · 윤준병
황운하 · 김우영 · 박찬대
박희승 · 이상식 · 전진숙
이개호 · 소병훈 · 백혜련
장종태 · 박해철 · 이학영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도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 위기와 분쟁 조정 제도의 낮은 신뢰성이라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음.

특히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사고의 구조적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보호 체계가 미비함. 이로 인해 의료진이 형사 처벌과 고액 배상의 위험 때문에 현장을 이탈하고 방어 진료에 치중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의료공급 체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의 부재와 조정 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분쟁이 장기간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당사자 모두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사고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며 당사자 모두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국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과 공소제한 및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아울러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 배상을 보장하며,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조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책임보험·책임공제,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2조의2, 제5조제5항 신설 등).

나.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유감의 뜻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와 같은 유감의 표현은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상임 이사 및 환자·소비자단체 추천 비상임 이사를 추가하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사회 정원을 11인으로 확대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의료사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가족, 의료사고 분쟁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의료인에게 심리상담·일상생활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의료사고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 및 의료사고감정단의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감정위원 교육 의무화, 감정부 구성의 전문성 및 다수 의견 청취 구조를 강화하며, 재감정·추가감정 요건을 완화함. 아울러 감정추천위원회의 추천 주체를 확대하고 의사결정 요건을 합리화하여 감정 및 조정 절차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정 자동개시 요건을 확대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조정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조

정 절차 간 연계를 강화함(안 제20조 및 제25조 등).

사.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의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신청의 경우 변호사 등이 의료분쟁 당사자의 의료분쟁 조정 관련 업무를 조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아. 의료사고 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다수의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감정위원은 감정서 작성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또한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자료 제출이 있는 경우 재감정 및 추가 감정을 허용하되, 기존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위원으로 감정부를 새로 구성하도록 하고, 감정서·조정조서·조정기일조서 등에 대한 열람·복사 권리를 명확히 함(안 제28조의2, 제29조 등).

자.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정·감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 옴부즈만을 운영하여 조정중재원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제46조 신설).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 관리 업무 위탁, 보험료 국가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7조 신설).

카. 현행법상 ‘분만(分娩)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되어 있는 보상 대상을 ‘필수의료행위 전반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확대하여 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9조제1항 등).

타.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 입
건에 대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행위 여부 등을 심의하
여 수사기관에 심의기간 동안 출석요구 자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3조부터 55조까지 신설).

파.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
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따른
조정 또는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규정함. 아울러 필수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
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되, 중대한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설명의무 위반 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7조, 제58조 신설).

하.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
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보
상이 이루어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공소제한 특
례를 규정함. 이 경우 중대한 의료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공소제한 판단에 필요한 의료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의료감정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01호) 및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1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책임보험”이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8. “책임공제”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이 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9. “필수의료행위”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위한 특별법」 제2조의 필수의료 중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이하 “중대한 과실”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하거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의료행위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 모니터링, 처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수술 또는 시술 과정에서 의료기구·이물질을 체내에 잔존시킨 경우
6.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한 후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의학적 진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

생한 경우

8.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여 환자에게 감염이 발생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9. 다른 환자에게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약품의 종류, 용량, 경로 또는 시기가 잘못되어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약제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약제를 투여한 경우

11. 다른 환자에게 수혈하거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혈액 등 잘못된 혈액을 수혈한 경우

12.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리·감독 책임자가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제5조제1항 중 “예방하기”를 “예방·피해구제 및 분쟁조정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설치·운영하는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운영”을 “운영, 의료사고 예방·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교육의 실시”로 한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 예방·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

런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장에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사고로 인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의3(의료사고 설명의무 등)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라 한다)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또는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한다)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이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은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이 행한 위로, 공감 또는 사고 발생 결과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는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형사상 재판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의무 발생 시기, 의료사고의 설명 내용·방식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사고지원팀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를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임할 수 없다”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및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되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명
5.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6. 의료사고감정단 단장
7. 보건복지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 행정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3명

제11조제2항 중 “위원장이”를 “상임이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장·위원장이”를 “원장·상임이사가”로, “단장”을 “위원장, 단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원장·위원장·단장”을 “원장·상임이사·위원장·단장”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사무국)”을 “(사무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사무국을”을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의료사고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의료사고 분쟁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보건의료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300명”을 “5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위원을”을 “9명의 인선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인선위원회(이하 “인선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조정위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제1항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매년 인선위원회의 직무수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③ 인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행정처, 법무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교육 또는 대학교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보건의료인은 제외한다)

④ 인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인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제2항 중 “100명 이상 300명 이내”를 “300명 이상 100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4호에 따른 감정에 관한 감정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교육 또는 대학교수 관련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상임 감정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매년 추천위원회의 직무수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전원”을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의료사고가 발생한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상임 감정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조정중재원은 감정위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감정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제8항 전단 중 “개시한다”를 “개시하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장애 정도가 중중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피신청인이 해당 기간 내에 조정절차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3.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인 경우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의료사고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정절차) ① 제55조에 따른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의료사고가 중대한 과실

이 없는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피해 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조정중재원은 제27조에 따른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에 있어서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진 의료사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감정부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감정결과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정절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당사자 조력) ① 조정중재원은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분쟁의 당사자를 조력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2. 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의료분쟁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분쟁 당사자 조력의 내용, 절차, 조력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정부는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2명 이상의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른 감정서 작성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중 “하고, 조정부는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조정부는 중대한 사실관계의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의 신청 또는 조정부의 직권으로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감정부에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추가감정) 조정부는 새로운 자료의 제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의 신청 또는 조정부의 직권으로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감정부에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추가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조정부는 조정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석기일을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조정부는 원활한 출석기일 운영을 위하여 출석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조정부는 제3항에 따른 출석준비기일 및 출석기일의 조정의 과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기일조서를 작성한다.

제38조제1항 중 “조정조서”를 “조정조서, 조정기일조서”로 한다.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제51조를 삭제하며,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제60조 및 제61조로 하고,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제51조 및 제52조로 하며, 제46조의2를 제50조로 하고,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장에 제3절(제45조 및 제4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조정·중재 ombudsman 등

제45조(조정 및 감정 결과의 공개) ① 원장은 조정, 중재 절차 완료 후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화 조치하여 조정중재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중재 및 감정결과 공개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료분쟁 조정·중재 ombudsman의 운영) ①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 ombudsman(이하 “ombudsman”이라 한다)을 둔다.

② 원장은 ombudsman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ombudsman의 업무,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을 “제8장 보칙”으로 한다.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을 “제6장 손해배상금 대불”로 한다.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제5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한다.

제4장(제4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

제47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보험등 상품 설계,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가입,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관리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수의료행위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고액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9조(종전의 제46조)제1항 중 “분만(分娩)에”를 “필수의료행위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그 의료사고 보상심의의 전제가 된 조정 또는 중재사건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재원은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제50조(중전의 제46조의2) 중 “제46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중전의 제4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부과·징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부과·징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에 따라”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대불하여야”를 “손해배상의무자의 미지급금 내에서 대불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재원의 잔액이 예상 대불비용의 10분의 1 이하가 될 경우에 해당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추가로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부과·징수하며, 보건 의료기관개설자별 추가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을 “제9장 벌칙”으로 한다.

제7장(제53조부터 제5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제53조(의료사고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의료사고의 필수의료행위 관련 여부
2. 의료사고의 중대한 의료과실 관련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

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5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5명

3. 법원행정처, 법무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5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명

5. 원장이 추천하는 2명

④ 심의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⑧ 심의위원회는 의료사고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과목별 또는 의료분야별로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의료사고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를 준용한다.

⑨ 심의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사무국) ① 제5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제5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명이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도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보건의료인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 의 수사를 진행 중인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의 요청 전에 제5조의3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할 것
2. 해당 의료사고 발생 전에 제47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상태일 것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통보받은 시·도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 또는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른 심의 기간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절차 완료 후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에 따른 의료행위 여부 등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화 조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자료의 제공)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53조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7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7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5조의3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 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에서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제58조(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의2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3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59조(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 ①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사고 당시 해당 의료인을 고용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확

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거나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가입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위 손해배상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제2조의2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3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소의 제한의 결정에 있어 수사기관은 필수의료행위 여부,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심의회위원회에 의료감정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사고심의회위원회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험관리 업무 위탁,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의료사고의 설명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책임보험”이란 <u>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u> 8. “책임공제”란 <u>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이 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u> 9. “필수의료행위”란 「필수의료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
<u><신 설></u>	
<u><신 설></u>	

<신 설>

조의 필수의료 중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이하 “중대한 과실”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하거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

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
고, 그 의료행위로 인하여 의
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을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 모니터링, 처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아니한 경
우

4.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안전관리 의
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수술 또는 시술 과정에서 의
료기구·이물질을 체내에 잔
존시킨 경우

6.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
른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한 후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의학적 진료지침 또는 통상
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
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하
여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제5조(국가·보건의료기관개설자	<u>8.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여 환자에게 감염이 발생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u> <u>9. 다른 환자에게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약품의 종류, 용량, 경로 또는 시기가 잘못되어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u> <u>10. 약제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약제를 투여한 경우</u> <u>11. 다른 환자에게 수혈하거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혈액 등 잘못된 혈액을 수혈한 경우</u> <u>12.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리·감독 책임자가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u> 제5조(국가·보건의료기관개설자
-------------------------	--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①
국가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
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
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⑤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①
-----예방·피
해구제 및 분쟁조정하기-----

-----.

② (현행과 같음)

③ -----

-----설치·운영하고 해
당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
고 예방·피해구제 및 분쟁조
정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의료
사고 예방·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
-----운영, 의료사
고 예방·피해구제 및 분쟁조
정 관련 교육의 실시-----

<신 설>

<신 설>

-----.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
료사고로 인한 「형법」 제268
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
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
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의3(의료사고 설명의무 등)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
료인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등”이라 한다)는 의료사
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또
는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한다)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
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이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의료사고 발생 사실
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
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환자등
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여야 한

다.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은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행한 위로, 공감 또는 사고 발생 결과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는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형사상 재판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

제10조(임원 및 임기) ① 조정중 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거로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의무 발생 시기, 의료사고의 설명 내용·방식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사고지원팀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 및 임기) ① -----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의료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및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되 제 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명

5.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6. 의료사고감정단 단장

7. 보건복지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 행정부처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

⑤ (생 략)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 고, <u>중임할 수 없다.</u>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생 략)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u>원</u> <u>장</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④ <u>원장·위원장이</u> 모두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단장</u>, 그 밖에 정 관으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생 략) 제13조(이사회) ① (생 략) ② 이사회는 <u>원장·위원장·단</u> <u>장</u>,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 ⑥ (생 략) 제14조(<u>사무국</u>) 조정중재원의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중 재원에 <u>사무국</u>을 둔다.	<u>무원 또는 3급 일반직 공무원</u> <u>(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u> <u>원을 포함한다): 3명</u> ⑤ (현행과 같음)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 고, <u>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u> <u>다.</u>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상</u> <u>임이사가</u> -----. ③ (현행과 같음) ④ <u>원장·상임이사가</u> ----- ----- ----- <u>위원장, 단장</u> ----- -----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원장·상임이사·위</u> <u>원장·단장</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u>사무조직</u>) ----- ----- ----- <u>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u> -----.
--	---

<신 설>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상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의2(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의료사고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의료사고 분쟁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보건의료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500명-----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략)

<신설>

② -----

--- 9명의 인선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인선위원회(이하 “인선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조정위원을 -----
-.

1. ~ 4. (현행과 같음)

③ 인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 행정처, 법무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⑤ 조정위원의 임기는 <u>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u> ⑥ · ⑦ (생 략)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① (생 략) ② 감정단은 단장 및 <u>100명 이상 300명 이내</u>의 감정위원으로	<u>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u> 4. 대학에서 <u>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교육 또는 대학교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보건의료인은 제외한다)</u> ④ <u>인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⑤ <u>인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⑥ · ⑦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⑧ -----<u>3년으로 하되, 제1항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매년 인선위원회의 직무수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u> ⑨ · ⑩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u>300명 이상 1000명 이내</u>-----
--	---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촉한다.

③·④ (생략)

<신설>

제26조(감정부) ①·② (생략)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
람은 3명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각각 2명으로 한
다.

1. ~ 3. (생략)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
한 사람(보건의료인은 제외한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제4호에 따른 감정에 관한 감
정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감정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4.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교육 또는 대학교수 관련 단

다)

④ · ⑤ (생략)

⑥ 감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각 감정부에 두는 감정위원
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외국
의 의사전문의 자격이나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
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
당하는 사람: 2명 <단서 신
설>

2. 3. (생략)

⑧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7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체-----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3년으
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상임
감정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
는 매년 추천위원회의 직무수
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⑦ _____

_____.

1. -----

. 다만, 제27조
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사고의 경우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3. (현행과 같음)

⑧

과반

수

⑨ (생략)

⑩ 감정부에 1명 이상의 상임
감정위원을 둔다. <단서 신설>

<신설>

⑪ ~ ⑭ (생략)

제27조(조정신청) ① ~ ⑦
(생략)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
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
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
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
하한다.

⑨ (현행과 같음)

⑩ -----
----- . 다만, 의료사
고가 발생한 진료과목을 담당
하는 상임 감정위원이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조정중재원은 감정위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감정
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⑫ ~ ⑮ (현행 제11항부터 제
14항까지와 같음)

제27조(조정신청)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개시하며,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응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해당 기간 내에 조
정절차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
지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1. (생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⑩ ~ ⑮ (생략)

<신 설>

⑨ -----

-----, -----
-----, -----.

1. (현행과 같음)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인 경우

⑩ ~ ⑮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의료사고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정절차) ① 제55조에 따른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의료사고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피해 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조정중재원은 제27조에 따른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에 있어서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진 의료사고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감정부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감정결과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정절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당사자 조력) ① 조정중재원은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분쟁의 당사자를 조력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2(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생략) <u><신설></u> 제29조(감정서) ① ~ ③ (생략) ④ 제26조제8항에 따라 감정결	1. <u>변호사</u> 2. <u>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u> <u>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u> <u>사람으로서 의료분쟁 관련 기</u> <u>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u> <u>이 있는 사람</u>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 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분쟁 당 사자 조력의 내용, 절차, 조력 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② 감정부는 제27조제9항에 따 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하 여는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 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2명 이상의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 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감정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른
---	--

과를 의결함에 있어 감정위원
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감정
위원의 소수의견도 함께 기재
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견진술 등) ① (생략)

②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
은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부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
에 대한 감정결과를 설명하여
야 하고, 조정부는 조정위원 과
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
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조정부가 제2항에 따라 재
감정을 요구한 경우 단장은 기
존 감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니

감정서 작성 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30조(의견진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다.

③ 조정부는 중대한 사실관계
의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의 신청 또는 조정부의
직권으로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감정부에 그 사유
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

한 감정위원으로 새로이 감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감정부는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속하지 아니한 보건의료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출석기일) ① 출석기일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 설>

<신 설>

-----.

⑤ 제4항-----

-----.

제30조의2(추가감정) 조정부는 새로운 자료의 제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의 신청 또는 조정부의 직권으로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감정부에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추가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출석기일) ① 조정부는 조정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석기일을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부는 원활한 출석기일 운영을 위하여 출석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조정부는 제3항에 따른 출석준비기일 및 출석기일의 조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정의 과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기일조서를 작성한다.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① -----

---조정조서, 조정기일조서---

-----.

② (현행과 같음)

제3절 조정·중재 ombudsman 등

제45조(조정 및 감정 결과의 공개)

① 원장은 조정, 중재 절차 완료 후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화 조치하여 조정중재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중재 및 감정결과 공개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료분쟁 조정·중재 ombudsman의 운영)

① 의료분쟁

<신 설>

<신 설>

조정·중재 제도의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
·중재 ombudsman(이하 “ombudsman”이라 한다)을 둔다.

② 원장은 ombudsman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ombudsman의 업무,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 입

제47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
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사람
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
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
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
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
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보험
등 상품 설계, 손해평가, 보험

	<u>금 지급 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③ <u>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가입,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관리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④ <u>국가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수의료행위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고액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u>
<u>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u> <u>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생략)</u>	<u>제5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u> <u>제48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현행 제45조와 같음)</u>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⑤ (생략)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제49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

-----필수의료
행위에-----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그 의료사고 보상심의의 전제가 된 조정 또는 중재사건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재원은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0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

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
용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① ~

③ (생략)

<신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
불비용 부담액의 산정·부과·
징수 업무를 조정중재원에 위
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중
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
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

-----제49조제1항-----

제6장 손해배상금 대불

제51조(손해배상금 대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재원의
잔액이 예상 대불비용의 10분
의 1 이하가 될 경우에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
로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
부과·징수하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추가 대불비용 부담
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
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
정·부과·징수 업무-----

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
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
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
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
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
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손해
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
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 의무
자”라 한다)의 대불금 상환 가
능성, 상환 예상액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

⑦ 조정중재원은 제6항에 따라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

-----.

⑦ -----

-----손해배상 의무자의 미

지급금 내에서 대불하여야----

-----.

⑧ -----제7항-----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⑧ 조정중재원은 제7항에 따라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제8항에 따른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자료의 제공) (생략)

<신설>

<신설>

-----.

⑨ -----제8항-----

-----.

⑩ 제7항-----

--제8항-----
-----제9항-----

-----.

제52조(자료의 제공) (현행 제48조와 같음)

제7장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제53조(의료사고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의료사고의 필수의료행위 관

런 여부

2. 의료사고의 중대한 의료과실
관련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판단 기준
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 위원은 의료사고나 의료분
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같은 법 제
5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단
체에서 추천하는 5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5명

3. 법원행정처, 법무부 또는 대
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5
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명

5. 원장이 추천하는 2명

④ 심의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⑧ 심의위원회는 의료사고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과목별 또는 의료분야별로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의료사고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2

<신 설>

<신 설>

8조, 제28조의2, 제29조를 준용한다.

⑨ 심의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사무국) ① 제5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제5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명이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도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보건의료인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진행 중인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의 요청 전에 제5조의3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할 것

2. 해당 의료사고 발생 전에 제
47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
에 가입한 상태일 것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에 따른 심의요청이 접수된 날
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 또
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통
보받은 시·도경찰청 소속 사
법경찰관 또는 지방검찰청 소
속 검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제3항에 따른 심의 기간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00

<신 설>

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절차 완료 후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에 따른 의료행위 여부 등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화 조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자료의 제공)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신 설>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7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7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5조의3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에서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신 설>

<신 설>

제58조(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의2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3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59조(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 ①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사고 당시 해당 의료인을 고용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거나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가입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위 손해배상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제2조의2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3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소의 제한의 결정에 있어 수사기관은 필수의료 행위 여부,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의료감정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49조(송달) (생략)

제50조(조정비용 등) (생략)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

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생략)

제7장 벌칙

제60조(송달) (현행 제49조와 같음)

제61조(조정비용 등) (현행 제50조와 같음)

<삭제>

제6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현행 제52조와 같음)

제9장 벌칙

<u>제53조</u> (벌칙) (생략)	<u>제65조</u> (벌칙) (현행 제53조와 같음)
<u>제54조</u> (과태료) (생략)	<u>제66조</u> (과태료) (현행 제54조와 같음)